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22호 2021. 6. 11(금)

| | |
|----------------|-------|
| 선 람 | 기관의 장 |
| | |

| |
|------------|
| 공 고 |
|------------|

- 남원시 공고 제2021-1224호 보상계획공고 ----- 1
- 남원시 공고 제2021-1231호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2021-1224호

보 상 계 획 공 고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대로3-201호)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1일

남 원 시 장**1. 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
- 나. 사 업 위 치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인월사거리 ~ 상우교
- 다. 사 업 량 : 도로개설 L=386m, B=25m
- 라. 사 업 기 간 : 2020 ~ 2022년(3개년)
- 마. 사업 시행자 : 남원시장

2. 보상대상

- 가. 토지 :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인월사거리 ~ 상우교
(편입토지 내역 : 별도 기재)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1. 06. 11 ~ 2021. 06. 26.
-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 (☎ 063-620-6462, 6464)
- 다. 열람 내용 : 토지조서
-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장소 등에 비치 및 게시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금 방법 및 절차

가. 보 상 시 기 :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나. 보 상 방 법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현금 지급(계좌입금)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다. 보상액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보 상 절 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남원시에 감정평가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남원시청 도시과(도시정비담당)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는 남원시청 도시과(도시정비담당)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문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미수령자 등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 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 기간, 구비 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보상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도시과 (☎ 063-620-6463, 64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

◎ 위치도



◎ 현황사진



토 지 조 서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번 | | | 지 목 | 면 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비 고 |
|----------|------------|-------------|-------------|--------|---------------|-----------------|-----------------------|-------------------|----------------------------|-----------------------|-------------|--------|
| | 면리 | 분 할 전 | 분 할 후 | | |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내 용 | |
| 1 | 인월면 인월리 | 210-5 | 210-7 | 답 | 13.0 | 8.0 | 인월면 인월로 | ***농 업협동 조합 | | | | |
| 2 | 인월리 | 210-2 | 210-6 | 답 | 843.0 | 169.0 | 인월면 달오름길 | 양*택 | 인월면 인월로 | ***새마을 금고 | 근저당 | |
| 3 | 인월리 | 208-2 | 208-3 | 답 | 1,867.0 | 178.0 | 인월면 천왕봉로 | 신*자 | 인월면 인월로 | ***농업협 동조합 | 근저당, 지상권 | |
| 4 | 인월리 | 206-16 | 206-16 | 답 | 42.0 | 42.0 | 인월면 인월1길 | 이*찬 | | | | |
| 5 | 인월리 | 206-3 | 206-3 | 답 | 71.0 | 45.0 | 인월면 천왕봉로 | 신*자 | | | | |
| 6 | 인월리 | 206-11 | 206-18 | 답 | 318.0 | 39.0 | 인월면 천왕봉로 | 오*록 | 인월면 인월로 | ***농업협 동조합 | 근저당 | |
| 7 | 인월리 | 207 | 207-2 | 답 | 1,498.0 | 50.0 | 인월면 천왕봉로 | 신*자 | | | | |
| 8 | 인월리 | 207-1 | 207-3 | 답 | 1,027.0 | 78.0 | 인월면 천왕봉로 | 허* | | | | |
| 9 | 인월리 | 204 | 204-7 | 답 | 326.0 | 33.0 | 인월면 천왕봉로 | 오*록 | 인월면 인월로 경남함양군함양 읍함양로 | ***농업협 동조합, 정*미 | 근저당, 가압류 | |
| 10 | 인월리 | 204-2 | 204-8 | 답 | 481.0 | 77.0 | 인월면 인월장터 로 | 박*호 | 남원시 봉맛길 | ***신용협 동조합 | 근저당, 지상권 | |
| 11 | 인월리 | 31-1 | 31-1 | 답 | 215.0 | 5.0 | 인월면 인월장터 로 | 박*호 | | | | |
| 12 | 인월리 | 204-3 | 204-9 | 답 | 210.0 | 10.0 | 아영면 아영부동 길 | 박*주 | | | | |
| 13 | 인월리 | 31 | 31-2 | 답 | 5,537.0 | 15.0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나*식 | | | | |
| 14 | 인월리 | 204-6 | 204-10 | 답 | 168.0 | 89.0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나*식 | | | | |
| 15 | 인월리 | 205-2 | 205-4 | 전 | 1,429.0 | 35.0 | 인월면 천왕봉로 | 소*봉 | | | | |
| 16 | 인월리 | 203-4 | 203-6 | 답 | 1,023.0 | 224.0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학당길 | 양*모 | | | | |
| 17 | 인월리 | 203-1 | 203-5 | 답 | 333.0 | 36.0 | 인월면 인월로 | 정*경 | | | | |
| 18 | 인월리 | 202-1 | 202-1 | 도 로 | 13.0 | 13.0 | 인월면 인월안길 | 박*기 | | | | |
| 19 | 인월리 | 202 | 202-2 | 답 | 784.0 | 13.0 | 인월면 인월안길 | 박*기 | | | | |
| 20 | 인월리 | 201-2 | 201-2 | 답 | 59.0 | 59.0 | 인월면 인월안길 | 박*기 | 인월면 인월로 | ***농업협 동조합 | 근저당, 지상권 | |
| 21 | 인월리 | 200-2 | 200-5 | 묘 지 | 208.0 | 9 중 15/75 |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여의나루로 | 장*화 | | | | |
| | | | | | | 9 중 12/75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 박*우 | | | | |
| | | | | | | 9 중 12/75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7길 | 박*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중 12/75 | 서울특별시 강남 구인주로 | 박*우 | | | | | |
| | | | | | | 9 중 12/75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 박*우 | | | | | |
| | | | | | | 9 중 12/75 |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구제금융로 7길 | 박*우 | | | | | |
| 22 | 인월리 | 201 | 201-3 | 답 | 964.0 | 69.0 | 인월면 인월안길 | 박*기 | | | | | |
| 23 | 인월리 | 200-1 | 200-4 | 답 | 1,010.0 | 224.0 | 인월면 인월안길 | 박*기 | 인월면 인월로 | ***농업협 동조합 | 근저당, 지상권 | | |
| 24 | 인월리 | 199 | 199-1 | 대지 | 1,088.0 | 3.0 | 산내면 대정리 | 농업회 사 두* 팜 | | | | | |
| 25 | 인월리 | 38-1 | 38-1 4 | 답 | 1,706.0 | 1 중 1/2 | 남원시 의서길 | 박*순 | | | | | |
| | | | | | | 1 중 1/2 | 인월면 인월중군 길 | 김*이 | | | | | |
| 26 | 인월리 | 38-4 | 38-1 8 | 대지 | 687.0 | 109.0 | 남원시 인월면 추암길 | 김*현 | 인월면 인월로 | ***농업협 동조합 | 근저당 | | |
| 27 | 인월리 | 38-9 | 38-1 9 | 답 | 1,306.0 | 219.0 | 부산광역시 기장 군 정관읍 정관3 로 | 정*진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 **새마을 금고 | 근저당, 지상권 | | |
| 28 | 인월리 | 38-2 | 38-1 5 | 도로 | 896.0 | 576.0 | 운봉면 서천리 | 박*욱 | | | | | |
| 29 | 인월리 | 38-7 | 38-7 | 도로 | 13.0 | 13.0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예술광장1 로 | 동*인 | | | | | |
| 30 | 인월리 | 38-1 3 | 38-1 3 | 답 | 21.0 | 21.0 | 인월면 인월1길 | 김*섭 | 인월면 인월로 | ***농업협 동조합 | 근저당, 지상권 | | |
| 31 | 인월리 | 38-6 | 38-6 | 도로 | 102.0 | 102.0 | 인월면 인월리 | 강*길 | | | | | |
| 32 | 인월리 | 38-3 | 37-1 7 | 답 | 335.0 | 65.0 | 인월면 인월2길 | 신*병 | | | | | |
| 33 | 인월리 | 38-1 0 | 38-2 0 | 제방 | 78.0 | 18.0 | 인월면 인월2길 | 신*병 | | | | | |

남원시 공고 제2021-1231호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 변경과 함께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 수정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현행)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 (개정) 남원시 지능정보화 조례
-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지능정보화의 추진, 민간기관등과의 협력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바. 지능정보화 교육, 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 사.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보호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6. 11 ~ 7. 1 (21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홍보전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3),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홍보전산과(전화 : 063-620-6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1. 6. .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홍보전산과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변경과 함께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 수정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현행)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 (개정) 남원시 지능정보화 조례
-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지능정보화의 추진, 민간기관등과의 협력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바. 지능정보화 교육, 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 사.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보호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 기 간 : 2021. 6. 11. ~ 7. 1.(21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3. “지능정보사회”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정보사회”를 말한다.
4. “지능정보서비스”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를 말한다.
5. “정보문화”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보문화”를 말한다.
6. “정보격차”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7. “정보보호”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를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 서비스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립·확정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의 정보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게 지능정보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현행 조례**

▣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남원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6.>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남원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남원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남원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남원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자치행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안전건설국장<개정 2019. 12. 11.>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19. 12. 11.>

③ 주관 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

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6.>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8. 7.>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6.>

제19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